

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3. 4. 16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3. 31
- 다. 회부일자 : 93. 4. 10
- 라. 상정일자 : 93. 4. 16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(1991. 5. 31 제4370호)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.(안 제23조 제7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삭제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이며 그
중요내용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퇴직전 3개월의 특별
휴가를 실시 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으로
본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첨부 : 개정조례(안)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3 조 (특별휴가)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 23 조 (특별휴가) ①~⑥(생 략)</p> <p>⑦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<u>명예퇴직</u>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<u>정년퇴직</u>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제 23 조 (특별휴가) ①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<u>정년퇴직</u>과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<u>명예퇴직</u>을 할 <u>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</u>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